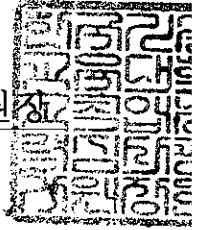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1. 목적

-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증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2.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3. 평가대상

(1) 평가대상 기관

- 아래 표에 제시된 평가대상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
 - 본사와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각각 인증평가 실시

구분	평가대상 훈련
집체 훈련	○ 실업자훈련 - 일반직종계좌제적합훈련(실업자 일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실업자 국기)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등 포함
	○ 재직자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기업맞춤형훈련, 채용예정자훈련 등)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 개인, 외국어훈련 등)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및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파트너 훈련기관

구분	평가대상 훈련
원격 훈련	○ 실업자훈련 - 일반직종계좌제적합훈련(실업자 일반) ○ 재직자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 개인): 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 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스마트훈련 및 블렌디드(집체+원격) 과정 포함

(2) 평가대상 구분

- 평가대상 내 발생한 주훈련대상 운영 실적 여부를 기준으로 실적보유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
 - 신규기관은 연 2회(상·하반기) 평가 운영

구분	평가대상 구분 기준
실적 보유 기관*	○ 훈련종료일이 2018.1.1.~2018.12.31.인 훈련기관 인증평가 대상 훈련을 실시한 집체훈련기관 및 원격훈련기관
신규 기관	○ (상반기) 훈련종료일이 2018.1.1.~2018.12.31.인 집체훈련 및 원격훈련 실적이 없는 기관 ○ (하반기) 훈련종료일이 2018.6.1.~2019.5.31.인 집체훈련 및 원격훈련 실적이 없는 기관 * 2019년 실적보유기관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기관 평가신청 불가

* 실적보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미신청하거나 포기한 경우 인증유예 등급 부여

- 다년인증 기관은 기관건전성평가 및 훈련성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다년인증 등급 유지 여부 결정

* 단, 다년인증 기관 중 2019년에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기관은 위 평가 대상 구분 기준에 따라 실적보유기관 또는 신규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함

(3) 평가대상 기간(실적보유기관)

- 훈련종료일이 2018.1.1.~2018.12.31.인 훈련과정의 운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 단,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의 준법성 항목, 2단계 역량평가(현장평가 및 성과평가)의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대상 기간은 지표별 평가기준에 따름
 - * 복수의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1개로 통합한 경우 각 관리번호의 훈련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통합된 기관의 평가에 반영

(1) 집체훈련 실적보유기관

**** 여러 종류의 훈련을 병행하는 기관의 경우 각각의 인증평가 대상기간의 훈련실시 비중을 고려하여 훈련별 지표 점수(40점) 산출**

- ① **실업자 훈련실시비중(%)**:
$$[(\text{실업자 평균훈련인원} \times 1.5) / (\text{실업자 평균훈련인원} \times 1.5 + \text{재직자 평균훈련인원} \times 1)] \times 100\%$$
- ② **재직자 훈련실시비중(%)**:
$$[(\text{재직자 평균훈련인원} \times 1) / (\text{실업자 평균훈련인원} \times 1.5 + \text{재직자 평균훈련인원} \times 1)] \times 100\%$$
- ③ **평균훈련인원** =
$$[(\text{A과정 실시인원} \times \text{A과정 훈련시간}) + (\text{B과정 실시인원} \times \text{B과정 훈련시간}) + \dots] / 8\text{시간}$$

- 3 -

(3) 원격훈련 실적보유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관건전성평가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역량 평가 (100점)	1. 성과평가* (60점)	훈련별 지표(45점)	
		실업자 훈련지표	
		1. 취업률	2. 수요자 만족도
		3. 중도탈락률	4. 과정운영실적
		5. 가점(취업자 임금수준, 블렌디드과정 개발·운영 실적)	
	재직자 훈련지표		
	1. 수료율	2. 수요자 만족도	
3. 훈련과정등급			
4. 가점(스마트과정 및 블렌디드과정 개발 운영 실적, NCS훈련 개발 운영 실적)			
공통 지표(15점)			
	1. 개설률	2.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	
2. 현장평가 (40점)	1. 기관경영	2. 훈련과정 관리	
	3. 훈련인프라	4. 훈련전담인력	
	5. 훈련생 관리		

* 성과평가 점수는 가점을 포함하여 60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원격훈련 신규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관건전성평가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역량 평가 (100점)	현장평가* (100점)	1. 기관경영 3. 훈련인프라 5. 훈련생 관리	2. 훈련과정 관리 4. 훈련전담인력

* 현장평가 시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평가

5. 인증평가 기준 및 방법

구분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2단계 역량평가		
		성과평가		현장평가
		훈련성과	수요자 만족도	
대상	평가대상 전체 기관	1단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방법	서면평가	서면평가	HRD-Net 훈련생 수강평 또는 전화 등 설문조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1)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 **(준법성)** 훈련기관의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이력,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내역,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하여 서면평가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이력: 1인당 10점 감점
 - 부정수급, 허위 과정 인정 및 위탁체결,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제재 처분 내역,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처분 수준에 따라 감점
 - 훈련실시 이력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검찰 송치일, 제재 처분일 또는 과태료 부과일이 2018.1.1.~2018.12.31.인 경우 평가에 반영(하반기 신규기관은 2018.6.1.~2019.5.31.에 해당)
 - * 2년 이상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은 처분의 유효기간이 2018.1.1.~2018.12.31.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
 - * 행정소송 및 심판 등의 본안판결을 통해 제재 처분 소송이 완료되는 경우, 본안 판결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
 - ※ 2020년부터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있고 그 결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감점처리를 유예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 포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감점 적용 예정
- **(재정건전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및 신용수준에 대해 서면평가
 - 국세 및 지방세 세금체납 여부: 세금체납 중이거나, 납세증명서를 미 제출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각 10점 감점
 - * 세금체납 여부는 2019.1.25.~2019.2.26. 기간 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만 인정함 (하반기 신규기관은 2019.6.22.~2019.7.23.에 해당)

- 신용수준: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5~10점 감점, 법인 완전자본잠식** (또는 기업신용등급 C등급 이하) 10점 감점
 - * 개인사업자는 2019.1.25.~2.26. 기간 내에 발급받은 개인신용등급보고서만 인정 (하반기 신규기관 2019.6.22.~7.23.)
 - **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발급 2017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2019.2.26.에 유효한 기업신용 보고서만 인정(하반기 신규기관 국세청 발급 2018년 표준재무제표, 2019.7.23. 유효 기업신용보고서)
 - ※ 2020년부터 신용수준 9~10등급(개인), 완전자본잠식(법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

(2) 2단계 역량평가

가. 성과평가(실적보유기관에 한함)

① 집체실적보유기관(60점)

실업자훈련(40점)* = 취업률(25점)+수요자만족도(10점)+중도탈락률(5점)+가점(3점)**

* 산재근로자도 실시인원에 포함하여 점수 산출

** 취업률(25점)=일반취업률(15점)+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10점)

○ (일반취업률) 훈련종료일 기준 2018.1.1.~2018.12.31.인 훈련과정 수료자 중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의 비율

-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취업률/전체 평균 취업률×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 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
- * 맞춤형기병, 사회복무요원으로 등록(상담기준)된 자는 취업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였더라도 2019년 7월말까지 HRD-Net에 승인되지 않은 자는 취업자로 인정되지 않음
- *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취업률 점수 0점 부여

< 일반취업률 산정 시 취업자 가중치 부여방식 >

- 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②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 적용)
- ② 취약계층의 취성패|유형 및 산재근로자는 취업자 1명을 1.5명으로,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는 1.2명으로 적용(취약계층 가중치 중복 미적용)
- ③ 기관 취업자 규모(①,② 적용 전)에 따라 가중치 차등 적용

기관 취업자수	200명 미만	200명 ~ 400명미만	400명 ~ 600명미만	600명 ~ 800명미만	800명 ~ 1,000명미만	1,000명 이상
가중치	1	1.1	1.2	1.3	1.4	1.5

-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 훈련종료일 기준 2017.1.1.~2018.12.31.인 훈련과정 수료자들의 수료 6개월 이후~2019년 6월말까지 매월말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 취업률을 평균하여 산정(가중치 미적용)
 -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취업률/전체 평균 취업률×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 맞춤형기병, 사회복지무요원으로 등록(상담기준)된 자, 일반고특화 훈련과정 수료생 중 고3남학생(상담기준)은 2개년 취업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
 - *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및 임의가입자,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 취업자 포함
 - *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2개년 취업률 점수 0점 부여
 - ※ 2020년부터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 지표를 폐지하고 고용유지 기간 평가 예정
- (수요자 만족도) 훈련생 만족도 점수를 1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부여
 - * 수요자 만족도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 점수 부여
- (중도탈락률) 실시인원 중 중도탈락자의 비율을 산출하여 평균 훈련시간*에 따라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 만점(5점) 부여, 1%p 증가 시 마다 0.5점씩 감점
 - * 평균 훈련시간 500시간 미만 중도탈락률 7%, 500시간 이상 중도탈락률 10% 기준
- (가점)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재직자훈련 지표(40점) = 수료율(20점)+수요자만족도*(20점)

* 수요자만족도(20점)=훈련생만족도(10점)+기업체만족도(10점)

- (수료율)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 단, 평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 근로자개인훈련만 운영한 기관의 경우 해당 그룹의 평균 수료율을 적용하여 등급 산정
- (수요자 만족도) 훈련생 및 기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점수를 각각 1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부여
 - * 근로자개인훈련만 운영한 기관은 훈련생만족도 점수를 20점으로 환산
 - * 수료생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시 수요자만족도 점수 0점을 부여하며, 수요자 만족도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 점수 부여

공통훈련 지표(20점) = 훈련이수자평가 결과(10점)+개설률(10점)

-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2018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대상 훈련과정(제1차~12차) 및 추가 평가 실시 과정*의 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평균 산출**

<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등급별 점수 >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미실시·평가포기(D등급)
10점	7점	5점	2점	0점

* 대표과정 외 추가신청 과정,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4차산업선도훈련과정 등 포함

** 훈련이수자평가 대상이 없는 훈련기관은 평균 점수 부여

- **(개설률)** 승인된 훈련과정* 중 개설한 훈련과정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산정대상: 2017.1.1.~2017.12.31.까지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개설실적을 반영하며, 반납 신청한 훈련과정 및 유효기간연장심사로 승인된 훈련과정 포함

② 원격실적보유기관(60점)

실업자훈련 지표(45점)

= 취업률*(25점)+수요자만족도(10점)+중도탈락률(5점)+과정운영실적(5점)+가점(5점)

* 취업률(25점)=일반취업률(15점)+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10점)

-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집체훈련기관과 동일
- **(중도탈락률)** 실시인원 중 중도탈락자의 비율을 산출하여 20%미만일 경우 만점(5점) 부여, 1%p 증가시마다 0.5점씩 감점
- **(과정운영실적)** 전체 평균 운영 과정수를 기준으로 훈련기관 운영 과정 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가점)** ①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 부여, ②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실적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재직자훈련 지표(45점)

= 수료율(20점)+수요자만족도*(20점)+훈련과정등급(5점)+가점(5점)

* 수요자만족도(20점)=훈련생만족도(10점)+기업체만족도(10점)

- **(수료율)**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요자 만족도)** 집체훈련기관과 동일
- **(훈련과정등급)** 훈련종료일 기준 2018.1.1.~2018.12.31. 운영 훈련과정의 등급에 따라 평균점수 부여
- **(가점)** ①스마트훈련과정 개발·운영실적 여부, ②NCS과정 개발·운영실적 비율, ③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실적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공통훈련 지표(15점) = 자동모니터링시스템연계적정성(5점)+개설률(10점)

-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적정성)** HRD-Net과 모니터링시스템(LOMS)의 수료건수 일치율 및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각각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연계데이터의 일치건수가 0건인 기관은 득점구간에 관계없이 0점 부여

- **(개설률)** 승인된 훈련과정(심사발급코드 기준) 중 개설한 훈련과정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산정대상: 2017.1.1.~2017.12.31.까지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개설실적 반영

나. 현장평가

- (사전 서면평가) 훈련기관이 현장평가 항목에 부합하는 기관운영 체계와 구체적인 사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사전 서면평가 실시

*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 시 인증평가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하며, 거짓·조작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인증유예 등급 부여

- (현장평가) 평가위원이 훈련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훈련 운영 관련자료 확인, 시설·장비 점검, 기관 구성원과 훈련생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

-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적절성, 활용도 등 평가항목별 보유 역량 평가

- 단, 2018년 실적보유기관으로 현장평가에 참여하여 1년인증 등급을 획득한 기관*에 한하여 2019년 현장평가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 면제를 선택한 기관은 2018년 현장평가 점수와 2019년 성과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2019년 인증등급 결정

* 2018년 평가 시 2017년 현장평가 점수를 선택한 기관과 2018년 신규기관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현장평가 미참여 선택 불가

** 현장평가 참여 또는 미참여에 대한 선택은 평가신청 단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정 불가

구분	집체훈련	원격훈련
평가시간	2~5시간	
평가위원 수	훈련전문가 2명, 내용전문가 1~2명 등 총 3~4명	원격훈련전문가 2명, 전산전문가 1명 등 총 3명

* 훈련기관의 규모, 실시직종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실적기준 대표훈련과정과 기관선정대표훈련과정의 직종(NCS 중분류 기준)이 동일한 경우 해당분야 내용전문가 1명, 직종이 다른 경우 내용전문가 2명(직종별 1명) 배정

* 지정된 일자에 현장평가를 거부하거나, 부재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평가포기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 현장평가 품질관리를 위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및 고용센터 직원 등의 현장평가 모니터링이 병행될 수 있음

6. 평가결과 판정

(1)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항목의 감점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 판정
 - 기관건전성평가 총 감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어, 이후 2단계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음
 - 기관건전성평가 10점 이상 감점되거나 2017.1.1.~2019년 평가결과 확정일까지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이상의 처분,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 경우 다년인증(5·3년) 선정 대상에서 제외

(2) 2단계 역량평가

가. 실적보유기관

- '1. 성과평가', '2. 현장평가' 영역의 취득 점수와 총점을 고려하여 5년인증, 3년인증, 1년인증, 인증유예로 평가결과 판정
- 단,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정부지원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인증유예 등급 부여

[실적보유기관 인증등급 판정 기준]

기관건전성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감점 20점 미만 (적합)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의 85% 이상 득점	5년인증*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의 75% 이상 득점	3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1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감점 20점 이상 (부적합)		인증유예

* 성과평가·현장평가 각 배점의 75% 또는 85% 이상이라 하더라도 우수훈련기관 선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다년인증 선정 대상에서 제외(1년인증)

** 2단계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점수가 각 배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인증유예

※ 2020년부터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인증유예 등급 부여 예정

인증등급	실적보유기관 인증등급 유효기간
5년인증*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5년 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3년인증*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3년 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1년인증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년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 2020년도 인증평가를 받아야 함
인증유예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년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 2020년도 인증평가 신청 가능

* 2018년 현장평가 점수와 2019년 성과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이 조정된 기관의 인증등급 유효기간은 2018년 평가 결과 확정일부터 적용

나. 신규기관

○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1년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평가결과 판정

* 원격훈련기관은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충족/미충족 여부)을 포함하여 평가

- 단,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정부지원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인증유예 등급 부여

[신규기관 인증등급 판정 기준]

기관건전성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감점 20점 미만 (적합)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1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미충족 시	인증유예
감점 20점 이상 (부적합)		인증유예

인증등급	신규기관 인증등급 유효기간
1년인증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년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 2020년도 인증평가를 받아야 함
인증유예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 2019년도 하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 신청 가능

* 인증등급 유효기간은 인증평가 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 인증등급은 훈련과정 인정·승인 시 반영

- * 인증유예 및 무등급 기관은 훈련과정심사 신청 제한(집체 및 원격훈련기관 동일 적용)
- * 인증평가 신청 기관이 통합심사 신청기간 개시 전에 인증등급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통합심사 신청은 허용하고, 추후 확정되는 인증등급을 통합심사 결과 확정 시 반영
- * 원격훈련 실적보유기관이 인증유예 등급으로 확정되는 경우, 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은 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부적합 판정(원격훈련 신규기관은 인증평가 등급 확정 전 과정심사 신청 불가)

○ 다년인증등급(5·3년) 획득 시,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

○ HRD-Net을 통해 인증평가 등급을 공개하여 평가 관련 정보 제공

8.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취소

(1) 우수훈련기관 선정 요건

○ 성과평가·현장평가에서 각 영역별 배점의 75% 또는 85% 이상인 기관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우수기관(3년인증) 및 최우수기관(5년인증)으로 선정

- ① 기관건전성평가의 감점이 10점 미만인 기관
- ② 2017.1.1.~2019년도 평가결과 확정일까지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이상의 처분,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이력이 없는 기관
- ③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의 의견을 반영한 인증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적합 판정된 기관

(2) 우수훈련기관 선정 취소 요건

- 우수훈련기관은 매년 기관건전성 평가 및 훈련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훈련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인증등급을 하향하거나 인증을 취소함(5·3년→1년인증 또는 인증유예)

구분	우수훈련기관 선정취소 요건
2019년 이전 선정 기관	①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즉시 선정취소 및 혜택 배제 ② 매년 실시한 기관건전성평가에서 10점 이상 감점 * 기관건전성평가에서 20점 이상 감점된 경우 인증유예 등급 부여 ③ 직전 1년(인증평가 대상 기간) 간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④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우수훈련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⑤ 매년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자) 일반취업률, 2개년 훈련수료생 취업률(총8등급) 중 1개 항목 이상 6등급 이하 - (재직자) 수료율(총7등급)이 5등급이하이거나 수요자만족도가 평균의 80%미만 * 실업자·재직자훈련 병행기관은 각 훈련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각각 적용한 후 양 훈련의 실시비중을 반영한 합이 0미만일 경우 우수기관 선정 취소 및 등급 하향 조정 * 2018년 선정 우수훈련기관은 2020년부터 성과평가 실시
2019년 선정 기관	①~④ 2019년 이전 선정 기관과 동일 ⑤ 매년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자) 일반취업률 및 수요자만족도가 전체 실업자훈련 평균의 90% 미만인 경우 - (재직자) 수료율 및 수요자만족도가 전체 재직자훈련 평균의 90% 미만인 경우 * 실업자·재직자훈련 병행기관은 각 훈련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각각 적용한 후 양 훈련의 실시비중을 반영한 합이 0미만일 경우 우수기관 선정 취소 및 등급 하향 조정 * 2019년 선정 우수훈련기관은 2021년부터 성과평가 실시

- 우수훈련기관 선정이 취소된 즉시 훈련과정 심사 우대, 회차 제한 미적용 등 우수훈련기관 우대 혜택 배제
- 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회차 제한 미적용 과정의 경우 조정된 잔여 유효기간 내 2회 개설 가능

9. 인증평가 일정

- 인증평가 신청 기관이 통합심사 신청기간 개시 전에 인증등급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통합심사 신청은 허용하고, 추후 확정되는 인증등급을 통합심사 결과 확정 시 반영
- 원격훈련 실적보유기관이 인증유예 등급으로 확정되는 경우, 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은 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부적합 판정(신규기관은 인증평가 등급 확정 전 과정심사 신청 불가)

(1) 실적보유기관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0. 평가 계획 사전안내	○ 2019년도 인증평가 계획 사전 안내	18.11.9.
1. 평가 계획 공고	○ 2019년도 평가기준 및 일정 공고	18.11.30.
2. 훈련기관 설명회	○ 주요 권역별 훈련기관 대상 설명회 실시	18.12.11.~ 12.20.
3. 평가신청 및 서류 접수	○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등 평가서류 온라인 제출(HRD-Net 심사평가시스템)	19.2.7.~2.21.
4.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 신청 기간 내 접수한 기관에 한하여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수정·보완(HRD-Net 심사평가시스템)	19.2.22~2.26.
5.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통보	○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온라인 통보	3월 중순
6. 현장평가 일정 안내 및 역량평가 실시	○ 기관건전성평가 적합 기관에 대해 2단계 역량평가(현장평가) 일정 온라인 통보* ○ 훈련기관별 역량평가 실시	4월 초 ~ 8월 말
7. 평가결과 통보	○ 5년인증/3년인증/1년인증/인증유예 등 평가결과 온라인 통보	9월 중순
8.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인증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온라인 제출 ○ 이의신청 심의 및 결과통보	9월 중순 ~ 10월 중순
9. 평가결과 확정	○ HRD-Net 인증평가 결과 게시	10월 중순

* 상기 일정은 2019년도 평가 운영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일정은 방문 2주 전까지 안내 예정

(2) 신규기관

구분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0. 평가 계획 사전안내	18.11.9.	
1. 평가 계획 공고	18.11.30.	
2. 훈련기관 설명회	18.12.11.~12.20.	
3. 평가신청 및 서류 접수*	19.2.7.~2.21.	19.7.4.~7.18.
4.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19.2.22.~2.26.	19.7.19.~7.23.
5.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통보	3월 중순	8월 중순
6. 현장평가 일정 안내 및 평가 실시**	3월말~5월초	8월 중순~10월말
7. 평가결과 통보	5월 중순	11월 중순
8.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5월 중순~5월말	11월 중순~11월말
9. 평가결과 확정	6월초	12월초

* 신규기관에 한하여 연2회 인증평가 신청가능

** 상기 일정은 2019년도 평가 운영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일정은 방문 1주 전까지 안내 예정

10. 인증평가 실시 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11. 담당자 연락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 전화번호: 1644-5113(내선 1번), 02-6943-4010
- 팩스번호: 02-6943-4025

[붙임1]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집체훈련기관 평가기준

☐ 실적보유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1.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당해 과징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 처분 당 7점 감점
		전과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15점 감점 · 과태료 부과 3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2.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개인사업자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9~10등급: 10점 감점
		법인사업자	· 원전자본잠식(자기자본0미만) 또는 기업신용등급 C등급이하: 10점 감점

· 적합: 감점 20점 미만
·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역량 평가 (100점 만점)	성과 평가 (60점)	훈 련 벨 지 표 (40 점)		• 5년인증: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85% 이상 득점 • 3년인증: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75% 이상 득점 • 1년인증: 60점 이상 (다년인증기관 제외) • 인증유예: 60점 미만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총배점의 40%미만 득점)
		실 업 자		
		1. 취업률(25점)	• 일반취업률(15점) -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취업률÷전체 평균 취업률×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훈련종료일 기준 2018.1.1~2018.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산출식: (6개월이내 취·창업자 ÷ 수료인원) × 100% ※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취업률 점수 0점 부여 •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10점) - 일반 취업률과 동일하게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훈련종료일 기준 2017.1.1.~2018.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산출방법: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들의 수료 6개월 이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매월말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 취업률을 평균하여 산정 ※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취업률 점수 0점 부여	
		2. 수요자만족도(10점)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3. 중도탈락률(5점)	• 평균 훈련시간에 따라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 만점(5점) 부여, 1%p 증가시마다 0.5점씩 감점 - 평균 훈련시간 500시간 미만 중도탈락률 7%, 500시간 이상 중도탈락률 10% 기준 ※ 산출식: [(실시인원-수료인원-조기취업자) ÷ 실시인원] × 100%	
		4. 가점(3점)	•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월평균보수액)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월평균보수액 기준	
		재 직 자		
		1. 수료율(20점)	•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산출식: (수료인원 ÷ 실시인원) × 100% ※ 단, 40시간 이상 근로자개인훈련만 운영한 기관의 경우 해당 그룹의 평균 수료율을 적용하여 등급 산정	
		2. 수요자만족도(20점)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훈련생 및 기업체 각각 10점으로 환산) ※ 근로자개인훈련만 운영한 기관은 훈련생만족도 점수를 20점으로 환산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현장 평가 (40점)	공통 지표 (20점)	1.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 (10점)	• 2018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대상 훈련과정(제1차~12차) 및 추가 평가 실시 과정의 평가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평균 산출 <table><tr><td>A등급</td><td>B등급</td><td>C등급</td><td>D등급</td><td>미실시:평가포기(D등급)</td></tr><tr><td>10점</td><td>7점</td><td>5점</td><td>2점</td><td>0점</td></tr></table> ※ 산출식: [(A등급 과정수×10) + (B등급 과정수×7) + (C등급 과정수×5) + (D등급 과정수×2)+(미실시·평가포기(D등급) 과정수×0)]÷('18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 추가신청 등 2018년 내 실시한 훈련이수자 평가 과정 전체) ※ 훈련이수자평가 대상이 없는 훈련기관은 평균 점수 부여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미실시:평가포기(D등급)	10점	7점	5점	2점	0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미실시:평가포기(D등급)							
	10점	7점	5점	2점	0점								
	2. 개설률(10점)	• 승인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신청일 기준 2017.1.1.~2017.12.31. 승인과정으로 성과 측정) ※ 산출식: (승인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승인과정 수) × 100% ※ 개설률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1. 기관경영(6점)	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②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③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2. 훈련과정 관리(8점)	① 훈련수요와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훈련과정개발 관련 경진대회 수상경력을 보유한 경우 우대 ② 훈련 절차별 운영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3. 시설 및 장비(10점)	① 훈련 운영에 적합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훈련 운영에 적합한 훈련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③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가?											
	4. 훈련전담인력(1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 훈련기관 소속 훈련전담인력 중 직업훈련교사 자격 소지자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수료한 경우 우대											
	5. 훈련생 관리(6점)	① 훈련생의 훈련적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 비콘출결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출결관리 지표에서 우대 ② 훈련생과 수료생의 취업 및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신규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 적합: 감점 20점 미만 •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당해 과정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처분 당 7점 감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15점 감점 • 과태료 부과 3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세금체납 여부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신용수준	개인사업자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9~10등급: 10점 감점
		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0미만) 또는 기업신용등급 C등급이하: 10점 감점
	2. 재정건전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역량평가 (100점 만점)	1. 기관경영(25점)	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②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발전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④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⑤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 1년인중: 60점 이상 • 인종유예: 60점 미만
	2. 훈련과정 관리(20점)	① 다양한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가? ②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④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3. 시설 및 장비(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시설 및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가? ④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가?	
	4. 훈련전담인력(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교·강사를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 운영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④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5. 훈련생 관리(15점)	① 훈련생 모집을 위한 훈련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② 훈련생의 훈련 참여 목적과 사전지식 수준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④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	

[붙임2]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원격훈련기관 평가기준

□ 실적보유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1.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당해 과정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처분 당 7점 감점
		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15점 감점 • 과태료 부과 3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2. 재정건전성	최저임금 위반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세금체납 여부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신용수준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9~10등급: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0미만) 또는 기업신용등급 C등급이하: 10점 감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적합: 감점 20점 미만 •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역량 평가 (100점 만점)	성과 평가 (60점)	실업자훈련 (60점)	• 5년인증: 성과평가·현장평가 각각 85% 이상 득점 • 3년인증: 성과평가·현장평가 각각 75% 이상 득점 • 1년인증: 60점 이상 (다년인증기관 제외) • 인증유예: 60점 미만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총배점의 40%미만 득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 일반취업률(15점) -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취업률÷전체 평균 취업률×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훈련종료일 기준 2018.1.1~2018.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산출식: (6개월이내 취·창업자 ÷ 수료인원) × 100% ※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취업률 점수 0점 부여 •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10점) - 일반 취업률과 동일하게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훈련종료일 기준 2017.1.1~2018.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산출방법: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들의 수료 6개월 이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매월말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 취업률을 평균하여 산정 ※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취업률 점수 0점 부여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 중도탈락률 20%미만일 경우 만점(5점) 부여, 1%p 증가시마다 0.5점씩 감점 ※ 산출식: [(실시인원-수료인원-조기취업자) ÷ 실시인원] × 100% • 전체 평균 운영과정수를 기준으로 훈련기관 운영과정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산출식: (훈련기관 운영과정수 ÷ 전체 평균 운영과정수) × 100% • 수료건수 일치율(2.5점): 수료건수 일치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기준 충족률(2.5점):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건수 일치율(%): (LOMS 수료건수 중 HRPD-Net과 일치하는 건수 ÷ HRPD-Net 수료건수)×100% ※ 수료기준 충족률(%): (LOMS 수료기준 충족 건수 ÷ HRPD-Net 수료건수)×100% - 단, 연계데이터의 일치건수가 0건인 기관은 득점구간에 관계없이 0점 부여 • 승인과정(심사발급코드기준)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신청일 기준 2017.1.1~2017.12.31. 승인과정으로 성과 측정) ※ 산출식: (승인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승인과정 수) × 100% ※ 개설률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월평균보수액)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3점)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월평균보수액 기준 • 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2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재 직 자 훈 련 (60점)	1. 수료율(20점)	-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산출식: (수료인원 ÷ 실시인원) × 100%	
	2. 수요자만족도(20점)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훈련생 및 기업체 각각 10점으로 환산) ※ 근로자개인훈련만 운영한 기관은 훈련생만족도 점수를 20점으로 환산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3. 훈련과정등급(5점)	- 평가대상년도에 운영한 훈련과정의 등급에 따라 평균점수 부여 ※ 산출식: [(A등급 과정수×5점) + (B등급 과정수×3점) + (C등급 과정수×1점)] ÷ 훈련기관 전체과정 수	
	4.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5점)	- 수료건수 일치율(2.5점): 수료건수 일치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기준 충족률(2.5점):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건수 일치율(%): (LOMS 수료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 ※ 수료기준 충족률(%): (LOMS 수료기준 충족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 - 단, 연계데이터의 일치건수가 0건인 기관은 득점구간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 개설풀(10점)	- 승인과정 중 개설했던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풀÷전체 평균 개설풀×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신청일 기준 2017.1.1.~2017.12.31. 승인과정으로 성과 측정) ※ 산출식: (승인이후 개설했던 과정 수 ÷ 승인과정 수) × 100%	
	6. 가점(5점)	- 스마트훈련과정 개발·운영 실적에 있는 경우(2점) - NCS훈련 개발·운영실적 비율(1점) - 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2점) ※ NCS 훈련 개발실적(%): (NCS 적용과정수 ÷ 2018년도 승인된 과정수) × 100% ※ NCS 훈련 운영실적(%): (NCS 적용과정수 ÷ 2018년도 운영한 과정수) × 100%	
현장 평가 (40점)	1. 기관경영(6점)	-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2. 훈련과정 관리(8점)	① 훈련수요와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훈련과정개발 관련 경진대회 수상경력을 보유한 경우 우대 ② 훈련 절차별 운영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3. 훈련인프라(10점)	①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콘텐츠, LMS, 시스템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 있는가? ③ 학습지원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4. 훈련전담인력(1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5. 훈련생 관리(6점)	① 훈련생의 훈련적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② 훈련생과 수료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신규기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 적합: 감점 20점 미만 •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당해 과징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처분 당 7점 감점		
	전과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15점 감점 • 과태료 부과 3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세금체납 여부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신용수준	개인사업자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9~10등급: 10점 감점
		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0미만) 또는 기업신용등급 C등급이하: 10점 감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역량평가 (100점 만점)	1. 기관경영(25점)	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②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발전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④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⑤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 1년인증: 60점 이상 • 인증유예: 60점 미만
	2. 훈련과정 관리(20점)	① 다양한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도입)할 수 있는가? ②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④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3. 훈련인프라(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도입)하고 콘텐츠 및 LMS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가? ③ 학습지원도구를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는가? ④ 학습지원도구에 대한 운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⑤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4. 훈련전담인력(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전담인력을 역량 및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④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5. 훈련생 관리(15점)	①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②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	